



의안번호	제 2013 - 14 호
보 고 연 월 일	2013. 6. 24. (제50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68차 전체 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회의 요지	1
II. 제69차 전체 회의	6
1. 일시·장소	6
2. 참석자	6
3. 주요 안건	6
4. 회의 요지	6
III. 향후 일정	11

<별첨자료>

최승원,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검토”

주용완, 조석영, “공정거래범죄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 검토”

주용완, 조석영, “제4기 양형기준 대상 범죄 선정 검토”

최승원,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검토 II”

주용완, 조석영, “제4기 양형기준 대상 범죄 선정 검토(II)”

운영지원단,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중 법률 변경 부분”



I. 제68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3. 5. 20.(월) 16:00 ~ 17:5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2. 참석자(10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혜정, 노수환, 조석영, 주용완, 최승원, 최진녕, 함석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검토

4. 회의 요지

가.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수에 관한 의견

(1) 다수의견

- 제1기 내지 제3기의 경우와 같이 7~8개 범죄군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자는 견해
- 양형기준 설정 이외에 양형기준 수정 작업 등을 병행해야 하므로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수를 확대할 경우 일정상 무리가 따를 수 있음을 주된 이유로 함

(2) 소수의견

-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의 수를 7~8개로 제한하지 말고 가능한 다수의 범죄군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자는 견해

-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보다는 용이하게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수를 확대하여도 제4기 양형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양형기준 설정을 완료할 수 있음을 주된 이유로 함

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에 관한 의견

(1)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

(가) 변호사법위반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하 같음) 선고 비율이 높은 편이며,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사건도 다수 발생
- 대표적 부패범죄로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법원 내, 외부의 의견이 많은 편임
- 비변호사의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등, 변호사나 사무직원의 공무원 교체 명목 금품 등 수수행위, 공무원 취업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행위 등을 대상으로 함

(나) 배임수증재

-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징역형 선고 비율도 높음
- 중요한 재산범죄 및 부패범죄로서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다) 권리행사방해

- 법정형이 높은 중한 범죄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징역형 선고 비율도 높음
- 권리행사방해, 강요·인질강요, 인질상해·치상, 인질치사, 강제집행면탈 등을 대상으로 함

(2) 대상 범죄군 포함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던 부분

(가) 명예에 관한 죄

1) 대상범죄

-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

2) 다수의견 : 제외

-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는 하나, 양형보다는 유·무죄가 문제되는 사례가 다수임
- 벌금형 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3) 소수의견 : 포함

-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인터넷 등의 확산으로 범죄의 발생빈도도 높아짐
- 개별 범죄의 유형분류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나) 공정거래범죄

1) 대상범죄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소비자기본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2) 다수의견 : 제외

- 공정거래범죄로 기소되는 사건의 수가 적어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선례가 부족함
- 기소되는 사건 중 상당수는 법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임
- 향후 기소 사건의 증가로 처벌례가 집적된 후에 양형기준을 만드는 것이 타당함

3) 소수의견 : 포함

- 사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범죄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함
-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소되는 사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다) 게임물 관련 범죄

1) 대상범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환전행위 등), 사행행위등

규제및처벌특별법위반 등

2) 다수의견 : 포함

-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높음

3) 소수의견 : 제외

- 과거 '바다이야기' 등 게임물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사건이 많이 발생한 적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임

(라) 근로기준법위반

1) 대상범죄

- 강제근로, 폭행, 중간착취 금지의무 위반, 해고 등 제한의무 위반, 취업 방해 금지의무 위반, 근로감독관의 위법사실 고의 묵과행위, 금품청산 의무위반, 임금지급의무위반, 도급사업 또는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의무 위반, 휴업수당지급의무위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지급의무 위반, 여성·미성년자 사용금지위반, 갱내근로금지위반 등

2) 다수의견 : 제외

-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범죄유형이 매우 복잡·다기하여 체계적인 양형기준 설정이 곤란함

3) 소수의견 : 포함

-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제3기에서도 양형기준 설정을 논의하다가 제4기로 미루어진 일이 있음

(3)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

- 이하의 범죄들은 범죄의 중요성이나 국민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벌금형 선고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이 일치됨

- 과실치사상의 죄
- 주거침입의 죄
- 환경범죄
- 병역법위반

(4) 대상 범죄군 포함 여부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부분

○ 이하의 범죄들은 차회 전문위원 회의에서 대상 범죄군 포함 여부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함

- 체포·감금·유기·학대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장물·손괴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
- 성매매알선 등

II. 제69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3. 6. 3.(월)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혜정, 노수환, 범현, 이수정, 조석영, 주용완, 최승원, 최진녕, 함석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검토

4. 회의 요지

가.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에 관한 의견

(1)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

: 지난 제68차 전체회의에서 대상 범죄군 포함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된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 권리행사방해 이외에 아래 범죄군에 관하여도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됨

(가) 게임물

- 2006년 이후 최근까지의 기간 전체를 보더라도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높음

(나) 성매매알선 등

-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징역형 선고 비율도 높음
- 성매매알선 범죄를 주된 대상으로 하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죄 등 일부 성매수 범죄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다수임

(2) 대상 범죄군 포함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던 부분

(가) 체포·감금·유기·학대

1) 대상범죄

- 유기·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존속학대, 아동학사, 유기등치사상, 체포·존속체포, 감금·존속감금, 중체포·존속중체포, 중감금·존속중감금, 특수체포·특수감금, 체포·감금등치사상죄 등

2) 다수의견(8인) : 포함

-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등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3) 소수의견(2인) : 제외

- 범죄 발생빈도가 낮고, 타 범죄에 비하여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나) 장물·손괴

1) 대상범죄

-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 중손괴, 특수손괴, 경계침범죄 등

2) 다수의견(7인) : 포함

- 전통적으로 중요한 재산범죄로 취급되고 있음
- 다른 중요 재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중요 재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완료한다는 의미가 있음

3) 소수의견(3인) : 제외

- 타 범죄에 비하여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다) 부정수표단속범위반

1) 대상범죄

- 부정수표 발행·작성, 금융기관에 대한 거짓신고, 수표 위·변조죄 등

2) 다수의견(6인) : 제외

- 범죄 발생빈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짐

3) 소수의견(4인) : 포함

- 범죄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다수임

(라)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 대상범죄

- 신용훼손, 업무방해, 경매·입찰방해죄 등

2) 다수의견(8인) : 제외

- 범죄의 발생빈도나 징역형 선고비율이 낮다고는 할 수 없으나, 타 범죄에 비하여는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떨어짐

3) 소수의견(2인) : 포함

-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범죄의 한 유형이므로 공정거래범죄와 함께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함
- 업무방해죄의 경우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

(마)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

1) 대상범죄

- 도주, 특수도주, 피구금자도주원조, 범인도피, 범인은닉, 증거은닉, 증거인멸 등

2) 다수의견(6인) : 포함

- 법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범죄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법집행 방해 범죄에 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도 강함

3) 소수의견(4인) : 제외

- 전형적인 법집행 방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며, 이에 관하

여는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타 범죄에 비하여는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떨어짐

(바) 공정거래범죄

1) 다수의견(8인) : 제외(논거는 전회와 같음)

2) 소수의견(2인) : 포함(논거는 전회와 같음)

(3)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

- 전회에서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의견이 일치된 과실치사상, 주거침입, 환경범죄, 병역법위반 범죄 이외에 전회에 포함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던 범죄들 중 명예에 관한 죄,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에 관하여도 타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서 제외하기로 함

나.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에 관한 의견

(1)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

⇒ 약취·유인, 마약, 식품·보건, 횡령·배임

- 약취·유인, 마약, 식품·보건범죄는 양형기준 시행 후 법률 개정이 있었으므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범위에서 양형기준을 수정
- 다만, 식품·보건범죄는 향후 관련 법률이 추가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다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어 수정 범위에 관하여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횡령·배임범죄는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진행 중이므로, 향후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함

(2) 대상 범죄군 포함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던 부분

⇒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

1) 다수의견(8인) : 제외

- 현재까지 위증, 무고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약 90%(공무집행방해는

통계가 산출된 바 없음)에 이르는 등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아니함

- 공무집행방해는 2011. 7. 1.부터 양형기준이 시행되었으므로, 양형기준 시행 경과를 좀 더 지켜본 후 양형기준을 수정함이 타당하며, 현 시점에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실무에 혼란을 초래함
- 제4기 양형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함과 동시에 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수정이 불가피한 약취·유인, 마약, 식품·보건, 횡령·배임범죄 등 양형기준의 수정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적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 무고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까지 함께 추진하는 것은 일정상 무리임

2) 소수의견(2인) : 포함

- 법집행 방해 범죄에 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의 신설과 함께 위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함으로써 사법방해범죄군의 완결성을 높임

다.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일정에 관한 의견

(1) 전반기(2013. 4. 27. ~ 2014. 4. 26.)

(가) 양형기준 설정

: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 성매매알선 등, 이견있는 범죄군
중 1개

(나) 양형기준 수정

: 약취·유인, 마약

(2) 후반기(2014. 4. 27. ~ 2015. 4. 26.)

(가) 양형기준 설정

: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이견있는 범죄군 중 2개

(나) 양형기준 수정

: 횡령·배임, 식품·보건

※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범죄는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함

경우 후반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III.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70차 전체회의는 추후 개최하기로 함